

의안번호	2202652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4. 10. 28.
추 계 번호	24B26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8.4	8.4	8.4	8.4	8.4	42	8.4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3. “중상해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량규정
2	안 제56조(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56조의2(중대재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공개)	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재해조사의견 공개 검토위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제1항)	
4	안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중상해재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6조(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나,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문참조
3	안 제56조의2(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공개)	○	—
4	안 제170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2조 ¹⁾ 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6조) 개정안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고,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및 ②관계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참여와 이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단 및 관계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따라 발생함
 - ①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공단이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조사에 대한 참여와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공단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²⁾에 근거하여 중대재해원인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³⁾에 따라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공단의 참여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공단이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조사에 대한 참여와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근거가 법률에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에 따르면, “중상해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함
-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하나, 만약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원인조사 참여 물량이 확대될 경우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③ 관계전문가의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참여와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근거가 법률에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공단에게만 재해원인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단이 아닌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재해원인조사를 요청하게 되므로 용역비용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중대재해의 발생건수, 중대재해원인조사를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요청할 횟수, 원인조사와 관련한 지원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56조의2) 개정안은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래에 설치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서는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2024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가 있으며, 이 중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는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므로, 동 개정안에 명시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인적 구성) 유사사례인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비)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4	8.4	8.4	8.4	8.4	42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추계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장래에 발생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